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51141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377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511418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계열

3. C

4. 주식회사 D

변론 종결 2023. 5. 12.

판결 선고 2023. 7. 2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96,306,642원 및 그 중 392,861,2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66,564,017원 및 그 중 165,031,552원에 대하여,
각 2022. 1. 13.부터 2022. 3. 3.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275,090원 및 그 중 227,829,735원에 대하여 2022. 1. 13.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21. 8. 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26160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1차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8. 3.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채권자 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액 1억 6,150만 원, 보증기간 2018. 3. 9.부터 2019. 3. 8.까지인(이후 보증기간이 2022. 3. 4.까지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8. 3. 9. 기업은행에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2차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와 피고 B의 책임경영이행약정

1) 원고는 2018. 7. 30. 피고 A와, 채권자 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액 2억 2,500만 원, 보증기간 2018. 7. 30.부터 2028. 7. 28.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7. 30. 기업은행에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한편,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 과정에서 같은 날인 2018. 7. 30. 원고와,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대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인은 보증기업이 원고로부터 제1조 표시 신용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 표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이하 '보증기업'이라고 한다)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의 각 조항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기업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어 부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약정인이 제2조에서 정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증기업 : 피고 A
2. 신용보증약정 : 2018. 7. 30.자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 한도거래용)
3. 보증원금(한도금액): 2억 5,000만 원
4. 보증(한도거래)기간 : 2018. 7. 30.부터 2028. 7. 28.까지

제2조(책임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약정인과 보증기업은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4.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회생, 파산, 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유용 등의 금지
5. 명의대여, 사해행위, 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의 금지
6. 제6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 외 사용금지
7.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책임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
8.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등)

-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원고는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전구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 ④ 제2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 시 자구노력 없이 휴업,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는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 피고 B와 피고 C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과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변경

1) 피고 B는 2019. 3. 21.경 피고 C과 주식 양도·양수계약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고 A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경영에서 탈퇴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그 무렵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 또한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21. 8. 18.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1. 13. 기업은행에 대하여 연체 대출원리금 392,861,287원[= 165,031,552원(1차 보증 원금 161,500,000원 + 이자 3,531,552원) + 227,829,735원(2차 보증 원금 225,000,000원 + 이자 2,829,735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외에도 미수 보증료, 미수 연체보증료, 미수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위변제금 392,861,287원에 미수 보증료 948,690원, 미수 연체보증료 21,050원, 미수 위약금 943,150원, 채권보전비용 1,532,465원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합계 396,306,642원이다.

3) 또한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8%이다.

마. 피고 C의 재산 처분행위

1) 피고 C의 배우자인 E는 2019. 3. 20.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9.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19. 5.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와 E는 2020. 7. 2. F조합과, 피고 C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피고 C는 2021. 8. 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8. 9. 접수 제126160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구상금 등 청구(피고 A, B, C에 대하여) 가) 원고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합계 396,306,642원을, 피고 C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으로서 이 사건 1차 신용보증 관련 대위변제금 등 합계 166,564,017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피고 C에게 피고 A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경영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2차 신용보증 관련 대위변제금 등 합계 231,275,090원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피고 D에 대하여)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2021. 8. 18.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피고 A,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다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사전구상권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구상금 등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B의 주장

(1)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 4. 2.부터 중소기업이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반하여 피고 B에게 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의 사전동의를 보증기업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 A가 2021. 8. 18. 기한이익을 상실하기 훨씬 전에 이미 피고 B가 피고 A의 주식과 경영권을 처분하였음을 알았고,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을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면서도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약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설령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은 전형적인 연대보증책임이 아니라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시점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 B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미 2019. 4. 초순경 피고 B가 피고 A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을 피고 C으로 변경하면서도,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고지하거나 주채무자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한 것은 회사 파산에 대한 압박 등을 원인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으로 이는 강박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C이 1/10 지분, E가 9/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20. 7. 2.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 C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21. 8. 9.)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해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의 소유지분인 1/10 지분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공제한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 C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 A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 D 또는 피고 C에게 악의 또한 없었다.

3. 구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는 396,306,642원(= 대위변제금 392,861,287원 + 미수 보증료 948,690원 + 미수 연체보증료 21,050원 + 미수 위약금 943,150원 + 채권보전비용 1,532,46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92,861,287원에 대하여, ②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166,564,017원(= 대위변제금 165,031,552원 + 채권보전비용 1,532,46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65,031,552원에

대하여, 각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2. 1.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22. 3. 3.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 변경절차를 통해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 변경계약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의 재정적인 위급 상황에서 피고 C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변경계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중 피고 B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신용보증한도금액, 신용보증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인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약관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한다.

2)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약관법 제3조 제3항),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 제4조는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신용보증회사와 기업경영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책임경영이행약정은 신용보증회사가 기업경영자의 연대보증 없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경영자에게 책임경영이행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그 책임을 묻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가 피고 B가 책임경영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정한 것은 피고 B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② 더욱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는 금융관련 법규의 준수(제1호)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제2호),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제3호) 등 제1 내지 6호에서는 기업경영자로서 기업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는 반면, 제7호에서는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등에 원고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도 책임경영의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어쩌면 보증기업의 계속적 경영이 사실상 강제될 여지가 있는 제2조 제7호의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피고 B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③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에 대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8. 4.경부터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된 이후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과 같은 책임경영이행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당시에는 위와 같은 책임경영이행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경영이행제도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거나 책임경영이행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피고 B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가 피고 B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가)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768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중요한 내용인 제2조 제7호, 제4조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는, 제2조에서 정한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 B가 피고 A와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목적인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의무 외에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등에 원고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제7호)까지도 책임경영의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약관법상 설명의무는 고객의 이해가능성, 그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의무를 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피고 B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을 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는 8개 조문이 2개 면에 걸쳐 기재되어 있어 비교적 내용이 길지 않고, 피고 B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를 묻는 부동문자로 된 질문에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직원 또는 상담자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 제4조에 관하여 피고 B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거나 피고 B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도 위와 같은 자필 기재 외에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③ 피고 B가 피고 C에게 보유한 피고 A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등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 제4조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바,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 B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 제4조에 따른 책임경영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만연히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로 대표이사의 지위를 사임하여 2억 2,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7호, 제4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구입자금 출처와 구입 경위,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1/10 지분, E가 9/10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이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의 가액에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공제한 부분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E가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물상보증인인 E가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C과 E가 부부 사이이기는 하나,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E가 피고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②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한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E는 2019. 3.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매수하면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피고 C이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에게 매도하고 남은 지분 9/10는 E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③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금의

채무자를 피고 C만으로 지정하였던 피고 C과 E, F조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은 법적으로 달리 취급되므로, 물상보증인을 채무자와 같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로 보기 위해서는 부부이고 공동으로 생활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④ 원고는 피고 C이 F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전부 피고 A, D의 운영에 사용되는 등 피고 C을 위하여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담보물을 통해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채무자가 받은 대출금이 물상보증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채무자가 받은 대출금이 물상보증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자신이 제공한 담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1. 8. 9.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억 원이고, 피고 C, D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1. 8. 9.에 가까운 2020. 7. 2.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354,7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소유 1/10 지분의 가액인 135,474,000원에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인 10억 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피고 C 소유 위 지분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소유 1/1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현석

판사안근홍

판사차현우

별지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 166,564,017원과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 231,275,090원의
합계액인 397,839,107원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금액인 396,306,642원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채권보전비용 1,532,465원을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과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피고 C과 피고 B에 대해
모두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 C은 그 채무액을 다투지 않고 있다.